



2012여수엑스포 2차 지정업소 모집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 거쳐 최종 선정 발표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식)는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쾌적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 음식, 쇼핑업소를 대상으로 2차 박람회 지정업소 선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월 7일 밝혔다.

2차 지정신청대상은 1차 지정사업 때와 같이 1권역으로 분류된 16개 지자체 내(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곡성, 화순, 장흥, 담양, 경남 하동, 남해, 사천, 진주, 전북 순창, 남원) 숙박·음식·쇼핑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2권역인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남권의 20여 개 지자체 내 박람회 추천 여행 코스 인근에 위치한 음식·쇼핑관련 업소들은 여행 전문가들의 추천과 사전조사를 통해 신청접수 안내 및 심사가 이루어진다.

지정업소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이며 서류심사 후 전문가들의 현장심사

등을 거쳐 지정업소를 최종 선정 발표한다.

지정업소를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16개 지자체 홈페이지와 여수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http://expo2012.or.kr>)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 E-mail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2권역 박람회 추천여행코스 인근 전문가 추천업소는 심사기관에서 직접 서류접수 안내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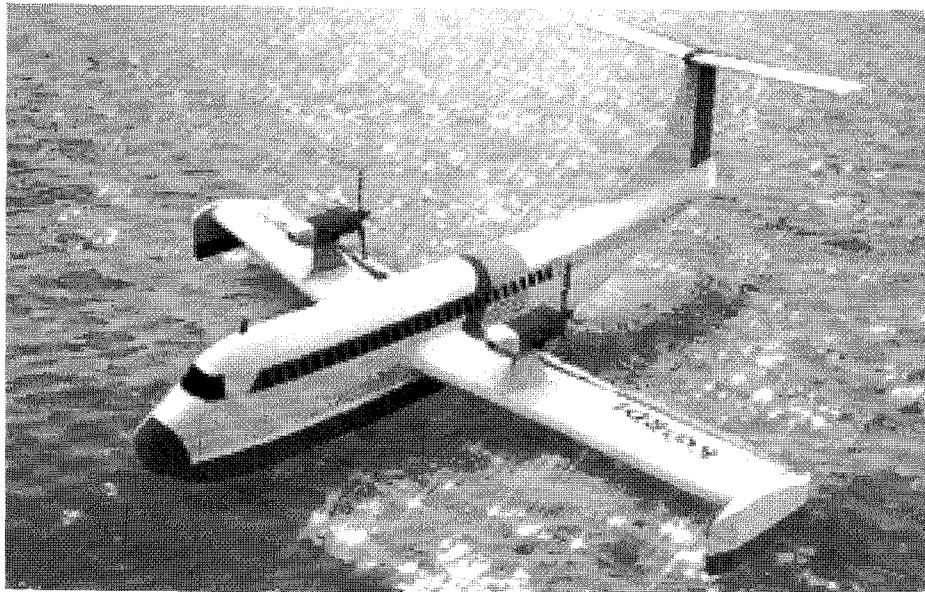
이에 앞서 지난해 1차로 선정된 393개 지정업소는 여수엑스포 홈페이지(www.expo2012.or.kr)와 공식 여행카페(<http://cafe.naver.com/expotour>) 등을 통해 각종 이벤트와 매체홍보가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직위는 지정업소에 대해 공공요금 감면, 지정물품 무상 제공, 유명인사 팸투어, 마케팅 지원,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엑스포 조직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엑스포 지정업소에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 부여하여 올해 상반기 18개 업소가 총 3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나라에서 19년 만에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신항 및 덕충동 일원에서 열린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 시행

제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승무경력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근거를 마련(안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했으며,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시험방법 및 승무경력 규정(안 제12조 제4항, 별표1의3 및 별표2)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조기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향후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면허	항 목	내 용		
공통	교육·훈련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공통	필기시험 ※ 실기, 면접 없음	항해, 수면비행선박 공학 등 5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소형 (10톤미만)	승무경력	필요자격	경력사항	기간
		5급항해사 이상	100톤이상 상선 또는 30톤이상 여객선·어선	1년
		자가용 조종사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	400시간
		4급항해사 또는 운항사 이상	500톤이상 상선 또는 50톤이상 여객선·어선	2년
		사업용 조종사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	500시간
중형 (10톤~500톤미만)				



삼호주얼리호 최종수사결과 발표

생포 해적 5명에 국내사법처리 방침

삼호주얼리호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7일 11시 남해해경 특별수사본부에서 전격 발표됐다.

이날 언론발표에서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 우리군에 의해 생포된 소말리아해적 5명에 대한 정부의 국내 사법처리방침에 따라 그동안 본부장 이하 4개 수사전담반을 구성, 50여명의 베テ랑 수사관들을 투입해 협법상 ‘해상강도살인미수’ 등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박납치’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영함에 생포된 5명을 포함한 해적 13명은 소말리아북부 퀸들랜드 지방 출신으로 지난 해 12월 중순 경 선박납치를 위해 결성됐으며, 그달

중순에는 40~50톤급 어선을 모선으로 해 소말리아 카라카드항을 출항해 납치할 선박을 찾아 인근 해역을 항해하면서 약 15일 간 총기조작 및 사격술과 사다리를 이용한 선박 진입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적들은 삼호주얼리호 선박납치 후 두차례 걸쳐 선장을 통해 선사인 삼호해운(주)에 전화를 걸어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해적들은 삼호해운(주) 소유의 시가 500억 상당의 삼호주얼리호 및 선박에 탑재된 시가 70억 상당의 화물과 선원들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과 귀중품 등 시가 2,750만원 상당을 강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개별 중소 물류창고 단지형으로 조성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을 중복 처벌하던 것을 개선하는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2월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 단지로 지정하여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도록 했다. 이는 창고 등이 난개발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백만원)을 중복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8~2.28) 중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i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을 수 있다.

항만운영사간 출혈경쟁이 가장 시급한 문제 대두

KMI 물류항만 이슈세미나에서 항만전문가들 의견 피력

물류 항만인들은 특히 현재 가장 이슈화된 운영사간의 출혈 경쟁 및 항만시설의 과잉 문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발표한 '2011년 한국 물류·항만 10대 이슈와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변진식 한국항만물류협회 전무

항만개발을 지속적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운영사들은 엄청난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인천항의 경우 부산항 보다 멀한 편이다. 하지만 인천항도 선석이 개장되면 출혈 경쟁이 생길 수 있다. 광양항 또한 200만TEU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최근 4개의 선석을 반납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과당경쟁 및 출혈을 부축하는 행위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선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하역사의 요율 인하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김홍석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

항만시설의 과잉과 요율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소위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가끔한다. 공자가 말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조회를 이루되 무턱대고 동조하지는 않는 것'을 뜻한다.

항만은 배후단지를 얼마나 활성화 하는지에 따라 생산성과 성공이 달려있다. 생활 공간기능, 부

가가치 창출 기능 등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 해외 항만 시설 건설 및 영역 구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 황성구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올해 1,500만TEU로 물동량 전망치를 잡았다. 주위에서는 이같은 물동량 전망치를 보고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1,500만TEU의 물동치를 달성하더라도 세계 순위 6위로 밀린다. 1,550만TEU를 달성해야 만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낭보, 청도 항이 매우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며 부산항을 뒤쫓고 있다.

하역 요율 안정화를 두고 과잉이냐 말들이 많은 것은 않다. 이에 법적체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로서는 전체 처리물량의 45% 정도 환적화물이라 변경이 심할 경우 이탈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상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박준권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시설과잉문제와 개발 측면의 문제이다. 이는 계속 이슈화 되고 있다. 항만 시설자체가 과연 과잉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2011년 국내 컨물동량 2천만TEU돌파 전망

전년대비 7.5% 증가한 2,076만TEU 기록 예상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올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를 2010년 대비 7.5% 증가한 2,076만TEU로 잡았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146만TEU나 많은 규모이며, 월평균 12만TEU 이상을 더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올해 목표대로 물동량을 처리한다면 중국(홍콩 포함),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번째로 2천만TEU를 처리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주요 항만별로 보면 국내 '컨' 물동량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항은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1,507만TEU를 목표로 잡았다.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 목표 물동량은 각각 827만3,000TEU와 671만3,000TEU이다.

국내 '컨' 물동량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항은 2010년 200만TEU시대를 넘어 개항 이래 최대 물량인 230만TEU(11.0% 증가)를 처리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컨' 물동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항도 2010년 대비 9.8% 증가한 204만3,000TEU를 목표로 잡고 있어, 부산항·광양항에 이어 3번째로 200만TEU항만 진입이 예상된다.

화물별로 보면, 수출입 항만 '컨' 물동량은 교역액 대비 물동량 증가 추이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물동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전년 대비 7.3% 증가한 1,320만OTEU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가가치가 높고, 허브항만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환적화물은 항만별 마케팅 목표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항(부산항, 광양항)에 조성된 항만 배후물류단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전년 대비 7.6% 증가한 713만4,000TEU로 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물동량 유치를 위해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로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해상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안컨테이너전용선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료·화물입출항료 등을 100% 감면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컨테이너항만도 물동량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과 마케팅전략을 내놓고 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선사당 볼륨인센티브 지급한도를 확대했으며, 일본·중국 등 전략 지역 화주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양항은 금년 2월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중부권·수도권 화주에 대한 집중마케팅을 실시하고, 글로벌 선사 타켓마케팅도 지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항 또한 선사유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韓-中, 韩-日 등 'Sea&Air' 환적

화물' 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에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 추세가 살아있어 적극적으로 환적화물 유치에 나서고, 항만배후물류단지 활성화에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물동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실적 및 2011년 목표 처리량

(단위 : 천TEU, %)

구 분	'09 실적		'10 실적		'11 처리목표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전 국	합 계	16,341	19,307	18.1	20,763	7.5
	수출입	10,369	12,299	18.6	13,200	7.3
	환 적	5,719	6,630	15.9	7,134	7.6
	연 안	253	378	49.4	429	13.5
부산항	소 계	11,980	14,183	18.4	15,070	6.3
	수출입	6,569	7,835	19.3	8,273	5.6
	환 적	5,372	6,266	16.6	6,713	7.1
	연 안	39	82	110.3	84	2.4
광양항	소 계	1,810	2,073	14.5	2,300	11
	수출입	1,477	1,727	16.8	1,900	10
	환 적	306	313	2.3	360	15
	연 안	27	34	28.0	40	17.6
인천항	소 계	1,578	1,860	17.9	2,043	9.8
	수출입	1,523	1,796	17.9	1,967	9.5
	환 적	18	21	11.2	25	19
	연 안	36	44	22.4	51	15.9
울산항	소 계	319	334	4.5	360	7.8
	수출입	302	325	7.7	348	7.1
	환 적	16	3	△78.8	5	46.1
	연 안	1	5	291.2	7	36.2
평택· 당진항	소 계	378	446	18.2	500	12.1
	수출입	371	425	14.3	474	11.5
	환 적	5	9	85	11	25.7
	연 안	2	12	591.5	15	23
기 타	소 계	276	410	48.5	490	19.5
	수출입	126	192	52.2	238	24
	환 적	1	18	1,341.60	20	11.1
	연 안	148	200	35.1	232	16

2011년 도선사 10명 최종합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늘 2011년도 도선사 시험 최종 합격자 10명을 확정·발표했다.

최종 합격한 10명은 지난 2010년 7월 총 100명이 응시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통과하고 6개월간 200회 이상의 실무수습을 완료한 후, 금년 2월 10일 실시된 최종 면접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인원들로서 수석 합격자는 부산항 도선구를 희망한 윤정만 씨로 밝혀졌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54세로 외항선박의 베테랑 선장 출신이다.

도선사(導船士)는 변화무쌍한 바다 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가로서, 도선 기술, 선박 항행장비와 조종성능에 대한 지식, 특정 항만의 기상 및 지리 지식 등 종합적인 능력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 도선사는 해상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시설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도선사의 응시자격을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갖춘 해기사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30여명의 도선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합격자 10명은 평택·대산·마산항에 각각 1명씩, 여수항 2명, 부산항에 5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 2011 도선사 합격자 명단〉

연 번	성 명	도선구
1	안외제	부산항
2	이경희	부산항
3	윤정만	부산항
4	최봉권	부산항
5	박재일	부산항
6	고정환	여수항
7	이우진	여수항
8	김 철	마산항
9	황병주	평택·당진항
10	이규봉	대산항



지난해 국제여객선 이용실적 최대 기록

여행 및 화물운송 수요증가로 역대최고 실적 달성

지난해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여행 및 화물운송 수요 증가로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여객과 화물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은 전년대비 32.6% 증가한 277만명, 화물은 22.5% 증가한 54만9,000TEU를 각각 수송한 것으로 집계돼 1970년 한일간 국제여객항로가 개설된 이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였던 2007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실적이 지난해 큰 폭으로 회복한 것이며, 이는 학생 등 단체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중국인의 한국여행 수요증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항로별로 보면, 한·중항로는 양국간 교역량 증가, 단체 여행수요 급증, 소상인 이용객의 증가 등에 힘입어 여객과 화물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30.2%와 28.6%로 크게 증가했다.

한·일항로 또한, 원화가치 하락,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여행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여객은 전년대비 36.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화물의 경우에는 5%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단체여행 관광수요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한중일간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객 및 화물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금년도에도 지난 1월 하순 광양과 시모노세키간 신규항로가 개설된 데 이어 2월 중순경에 평택과 일조항로가 추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어 한·중·일간 신규 여객수요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한·중·일·러 간에는 총 22개의 국제여객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중 한·중항로에는 14개 항로 14척이, 한·일항로에는 6개항로 14척이, 한·중·러 및 한·일·러 항로에는 2개항로 2척의 국제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항로별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		%		%		%		
여객 (명)	계	2,112,939		2,392,459	13.2	2,549,874	6.6	2,536,333	△0.5	2,088,967	△17.7	2,769,808	32.6
	항객	1,027,293		1,176,810	14.6	1,104,651	△6.1	1,096,792	△0.7	1,141,193	4	1,485,738	30.2
	한일	1,028,333		1,151,531	12	1,396,051	21.2	1,405,811	0.7	901,105	△35.9	1,226,119	36.1
	한·러·중	57,313		64,118	11.9	49,172	△23.3	33,730	△31.4	46,669	37.5	57,951	25
화물 (TEU)	계	379,808		435,939	14.8	497,779	14.2	486,667	△2.2	448,400	△7.9	549,128	22.5
	한중	278,347		330,225	18.6	378,244	14.5	363,276	△4.0	337,823	△7.0	434,451	28.6
	한일	96,859		100,243	3.5	114,217	13.2	120,712	5.7	107,201	△11.2	112,595	5
	한·러·중	4,602		5,471	18.9	5,318	△2.8	2,679	△49.6	3,376	26	2,082	△38.3

1월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1월 최고실적 기록

165만9천TEU 처리, 전년대비 12.7%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항만의 1월 컨테이너 물동량(추정)이 165만9,000TEU로 지난해 같은 달의 147만2,000TEU에 비해 1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1월 물동량으로는 최고 실적이다.

수출입화물은 106만TEU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1월 대비 16.3% 늘어났으며, 환적화물(56만1,000TEU)도 주요 선사들이 부산항을 통한 환적을 확대함에 따라 6.9% 증가했다.

수출입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4%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1월 물동량은 작년 동월보다 15.6% 증가한 122만6,000TEU를 기록했다. 특히 韓-美, 韓-中 등 수출입화물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환적화물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주요 선사의 환적

확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양항 1월 물동량은 작년 동월보다 2.2% 감소한 16만8,000TEU를 기록했으나, 2월 이후에는 전주-광양고속도로 개통 등 배후도로망 확충과 신규항로(동남아, 시모노세키) 개설에 따라 호남권 물동량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항 1월 물동량은 수도권 지역의 對中 수입 증가 등 수출입화물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8.2% 증가한 15만6,000TEU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출입화물의 증가에 힘입어 역대 1월 최고 물동량을 달성하였으며, 이 추세 대로라면 올해 무난히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 TEU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월('06~'11)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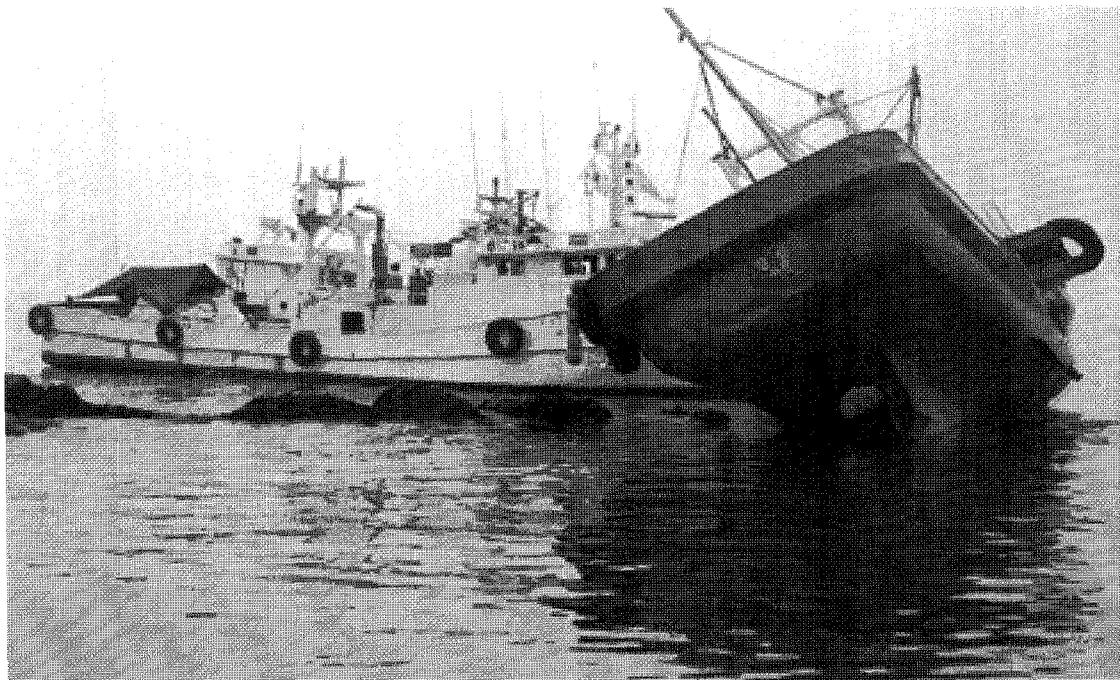
(단위 : 천TEU, %)

구분	'06.1	'07.1	'08.1	'09.1	'10.1	'11.1
합계 (증가율)	1,272	1,382 -8.7	1,459 -5.6	1,172 △19.7	1,472 -25.6	1,659 -12.7
수출입 (증가율)	777	907 -16.6	937 -3.3	695 △25.8	911 -31.1	1,060 -16.3
환적 (증가율)	464	460 △0.8	501 -8.9	457 △8.9	525 -14.8	561 -6.9
연안 (증가율)	30	15 △49.6	21 -41.4	20 △8.3	37 -85.8	38 -4.2



3월 해양사고는 적지만 충돌사고 빈도 높아

지난 5년간 3월 발생 해양사고가 전체 58.8% 차지



3월은 해양사고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지만 충돌 전복사고에 대한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3월에 발생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8.8%가 충돌사고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3월은 연중 두 번째로 사고가 적은 달이었으나, 충돌사고 발생비중이 전체의 26.3%(62건)로 월평균 충돌사고 발생비중(24.4%) 보다 높았으며, 전복사고는 11월(11건)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빈발(10건)했고 주로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중 선종별 주요사고 사례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황천 항해를 하는 어선은 대각도 변침에 의한 전복사고를 조심하여야 하고, 1,000~5,000톤

급 화물선은 오전 4시~8시대 당직자에게 충분한 사전휴식을 주어 새벽시간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부선 선원은 탱크 등 밀폐구역 작업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피예인부선 정비 작업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 해상추락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한 3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36건(312척)으로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75건(31.8%) ▲충돌 62건(26.3%) ▲좌초 및 안전지해 각 16건(각각 6.8%)

▲운항저해 13건(5.5%) ▲화재 및 전복 각 10건(각각 4.2%) ▲침몰 및 인명사상 각 8건(각각 3.4%) ▲기손상 7건(3.0%) ▲조난 4건(1.7%) ▲접촉 3건(1.3%) ▲기타 4건(1.6%)의 순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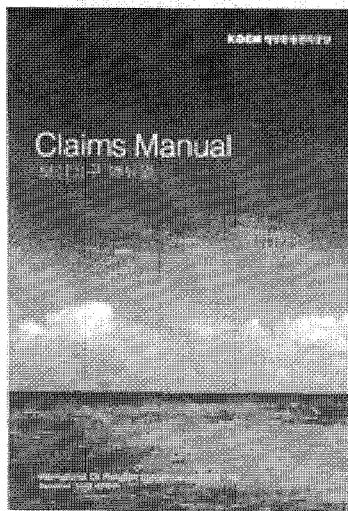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02명(사망실종 75명, 부상 27명)으로 ▲충돌 60명(58.8%) ▲전복 29명(28.4%) ▲인명사상 10명(9.8%) ▲화재 2명(2.0%) ▲좌초 1명(1.0%)의 순이었다.

특히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은 화물선 충돌사

고(2척에서 28명)에서, 부상은 어선 충돌사고(14척에서 23명)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3월의 안전운항 실천 운동 구호로 ‘충돌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당시 상황에 맞는 안전속력을 유지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IOPC 보상청구 매뉴얼 개정판 번역본 제작 배포



CONTENTS

제1부	제2부
제1장	제1장
제2장	제2장
제3장	제3장
제4장	제4장
제5장	제5장
제6장	제6장
제7장	제7장
제8장	제8장
제9장	제9장
제10장	제10장
제11장	제11장
제12장	제12장
제13장	제13장
제14장	제14장
제15장	제15장
제16장	제16장
제17장	제17장
제18장	제18장
제19장	제19장
제20장	제20장
제21장	제21장
제22장	제22장
제23장	제23장
제24장	제24장
제25장	제25장
제26장	제26장
제27장	제27장
제28장	제28장
제29장	제29장
제30장	제30장
제31장	제31장
제32장	제32장
제33장	제33장
제34장	제34장
제35장	제35장
제36장	제36장
제37장	제37장
제38장	제38장
제39장	제39장
제40장	제40장
제41장	제41장
제42장	제42장
제43장	제43장
제44장	제44장
제45장	제45장
제46장	제46장
제47장	제47장
제48장	제48장
제49장	제49장
제50장	제50장
제51장	제51장
제52장	제52장
제53장	제53장
제54장	제54장
제55장	제55장
제56장	제56장
제57장	제57장
제58장	제58장
제59장	제59장
제60장	제60장
제61장	제61장
제62장	제62장
제63장	제63장
제64장	제64장
제65장	제65장
제66장	제66장
제67장	제67장
제68장	제68장
제69장	제69장
제70장	제70장
제71장	제71장
제72장	제72장
제73장	제73장
제74장	제74장
제75장	제75장
제76장	제76장
제77장	제77장
제78장	제78장
제79장	제79장
제80장	제80장
제81장	제81장
제82장	제82장
제83장	제83장
제84장	제84장
제85장	제85장
제86장	제86장
제87장	제87장
제88장	제88장
제89장	제89장
제90장	제90장
제91장	제91장
제92장	제92장
제93장	제93장
제94장	제94장
제95장	제95장
제96장	제96장
제97장	제97장
제98장	제98장
제99장	제99장
제100장	제100장
제101장	제101장
제102장	제102장
제103장	제103장
제104장	제104장
제105장	제105장
제106장	제106장
제107장	제107장
제108장	제108장
제109장	제109장
제110장	제110장
제111장	제111장
제112장	제112장
제113장	제113장
제114장	제114장
제115장	제115장
제116장	제116장
제117장	제117장
제118장	제118장
제119장	제119장
제120장	제120장
제121장	제121장
제122장	제122장
제123장	제123장
제124장	제124장
제125장	제125장
제126장	제126장
제127장	제127장
제128장	제128장
제129장	제129장
제130장	제130장
제131장	제131장
제132장	제132장
제133장	제133장
제134장	제134장
제135장	제135장
제136장	제136장
제137장	제137장
제138장	제138장
제139장	제139장
제140장	제140장
제141장	제141장
제142장	제142장
제143장	제143장
제144장	제144장
제145장	제145장
제146장	제146장
제147장	제147장
제148장	제148장
제149장	제149장
제150장	제150장
제151장	제151장
제152장	제152장
제153장	제153장
제154장	제154장
제155장	제155장
제156장	제156장
제157장	제157장
제158장	제158장
제159장	제159장
제160장	제160장
제161장	제161장
제162장	제162장
제163장	제163장
제164장	제164장
제165장	제165장
제166장	제166장
제167장	제167장
제168장	제168장
제169장	제169장
제170장	제170장
제171장	제171장
제172장	제172장
제173장	제173장
제174장	제174장
제175장	제175장
제176장	제176장
제177장	제177장
제178장	제178장
제179장	제179장
제180장	제180장
제181장	제181장
제182장	제182장
제183장	제183장
제184장	제184장
제185장	제185장
제186장	제186장
제187장	제187장
제188장	제188장
제189장	제189장
제190장	제190장
제191장	제191장
제192장	제192장
제193장	제193장
제194장	제194장
제195장	제195장
제196장	제196장
제197장	제197장
제198장	제198장
제199장	제199장
제200장	제200장
제201장	제201장
제202장	제202장
제203장	제203장
제204장	제204장
제205장	제205장
제206장	제206장
제207장	제207장
제208장	제208장
제209장	제209장
제210장	제210장
제211장	제211장
제212장	제212장
제213장	제213장
제214장	제214장
제215장	제215장
제216장	제216장
제217장	제217장
제218장	제218장
제219장	제219장
제220장	제220장
제221장	제221장
제222장	제222장
제223장	제223장
제224장	제224장
제225장	제225장
제226장	제226장
제227장	제227장
제228장	제228장
제229장	제229장
제230장	제230장
제231장	제231장
제232장	제232장
제233장	제233장
제234장	제234장
제235장	제235장
제236장	제236장
제237장	제237장
제238장	제238장
제239장	제239장
제240장	제240장
제241장	제241장
제242장	제242장
제243장	제243장
제244장	제244장
제245장	제245장
제246장	제246장
제247장	제247장
제248장	제248장
제249장	제249장
제250장	제250장
제251장	제251장
제252장	제252장
제253장	제253장
제254장	제254장
제255장	제255장
제256장	제256장
제257장	제257장
제258장	제258장
제259장	제259장
제260장	제260장
제261장	제261장
제262장	제262장
제263장	제263장
제264장	제264장
제265장	제265장
제266장	제266장
제267장	제267장
제268장	제268장
제269장	제269장
제270장	제270장
제271장	제271장
제272장	제272장
제273장	제273장
제274장	제274장
제275장	제275장
제276장	제276장
제277장	제277장
제278장	제278장
제279장	제279장
제280장	제280장
제281장	제281장
제282장	제282장
제283장	제283장
제284장	제284장
제285장	제285장
제286장	제286장
제287장	제287장
제288장	제288장
제289장	제289장
제290장	제290장
제291장	제291장
제292장	제292장
제293장	제293장
제294장	제294장
제295장	제295장
제296장	제296장
제297장	제297장
제298장	제298장
제299장	제299장
제300장	제300장
제301장	제301장
제302장	제302장
제303장	제303장
제304장	제304장
제305장	제305장
제306장	제306장
제307장	제307장
제308장	제308장
제309장	제309장
제310장	제310장
제311장	제311장
제312장	제312장
제313장	제313장
제314장	제314장
제315장	제315장
제316장	제316장
제317장	제317장
제318장	제318장
제319장	제319장
제320장	제320장
제321장	제321장
제322장	제322장
제323장	제323장
제324장	제324장
제325장	제325장
제326장	제326장
제327장	제327장
제328장	제328장
제329장	제329장
제330장	제330장
제331장	제331장
제332장	제332장
제333장	제333장
제334장	제334장
제335장	제335장
제336장	제336장
제337장	제337장
제338장	제338장
제339장	제339장
제340장	제340장
제341장	제341장
제342장	제342장
제343장	제343장
제344장	제344장
제345장	제345장
제346장	제346장
제347장	제347장
제348장	제348장
제349장	제349장
제350장	제350장
제351장	제351장
제352장	제352장
제353장	제353장
제354장	제354장
제355장	제355장
제356장	제356장
제357장	제357장
제358장	제358장
제359장	제359장
제360장	제360장
제361장	제361장
제362장	제362장
제363장	제363장
제364장	제364장
제365장	제365장
제366장	제366장
제367장	제367장
제368장	제368장
제369장	제369장
제370장	제370장
제371장	제371장
제372장	제372장
제373장	제373장
제374장	제374장
제375장	제375장
제376장	제376장
제377장	제377장
제378장	제378장
제379장	제379장
제380장	제380장
제381장	제381장
제382장	제382장
제383장	제383장
제384장	제384장
제385장	제385장
제386장	제386장
제387장	제387장
제388장	제388장
제389장	제389장
제390장	제390장
제391장	제391장
제392장	제392장
제393장	제393장
제394장	제394장
제395장	제395장
제396장	제396장
제397장	제397장
제398장	제398장
제399장	제399장
제400장	제400장
제401장	제401장
제402장	제402장
제403장	제403장
제404장	제404장
제405장	제405장
제406장	제406장
제407장	제407장
제408장	제408장
제409장	제409장
제410장	제410장
제411장	제411장
제412장	제412장
제413장	제413장
제414장	제414장
제415장	제415장
제416장	제416장
제417장	제417장
제418장	제418장
제419장	제419장
제420장	제420장
제421장	제421장
제422장	제422장
제423장	제423장
제424장	제424장
제425장	제425장
제426장	제426장
제427장	제427장
제428장	제428장
제429장	제429장
제430장	제430장
제431장	제431장
제432장	제432장
제433장	제433장
제434장	제434장
제435장	제435장
제436장	제436장
제437장	제437장
제438장	제438장
제439장	제439장
제440장	제440장
제441장	제441장
제442장	제442장
제443장	제443장
제444장	제444장
제445장	제445장
제446장	제446장
제447장	제447장
제448장	제448장
제449장	제449장
제450장	제450장
제451장	제451장
제452장	제452장
제453장	제453장
제454장	제454장
제455장	제455장
제456장	제456장
제457장	제457장
제458장	제458장
제459장	제459장
제460장	제460장
제461장	제461장
제462장	제462장
제463장	제463장
제464장	제464장
제465장	제465장
제466장	제466장
제467장	제467장
제468장	제468장
제469장	제469장
제470장	제470장
제471장	제471장
제472장	제472장
제473장	제473장



2010년 해적피해로 인한 피해액 70억달러 육박

선박 보험비와 운항비용 급상승등 경제적 손실 가중



글로벌 해운불황의 여파로 해운선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해적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70억~12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랍된 선원에 대한 평균 몸값은 540만달러로 2005년에 기록한 15만달러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2010년 최대 몸값을 기록한 사례로는 11월에 피랍된 삼호드림호가 기록한 950만달러이며 전체 몸값은 2억3,8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적들의 활동은 점점 더 대담해져 인도양 해역 전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 해적에 의해 납치된 선원들은 총 18개국 500여명에 이르렀다.

주요 납치 해역은 소말리아해역, 나이지리아, 기니, 말라카해역 그리고 인도양 연안이며 납치된 선박들은 해적에 의해 본거지인 소말리아로 끌려갔다.

한 해적전문기관은 해적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잠정적으로 70억~1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물론 이수치는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현재 경제

현황을 고려하면 연간 20억달러 상당이 파병해군의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 비용에는 현재까지 파병된 해군함 43척의 운항일수, 인건비, 운항비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해적퇴치비와 고용비를 제외하고서도 아프리카와 인도양, 유럽 그리고 북미등의 해적 예방비도 상당액을 차지하였다.

또한 2010년 동안 잡힌 해적들에 대해 구속, 기소 그리고 처벌 등에 사용된 비용만 3,1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해적보험비용 또한 증가추세이다.

이미 전쟁위험지역 통과에 대한 추가 해적보험에 상당수의 선박이 가입되어 있으며 총 비용은 4억6,000만달러에서 32억달러까지 전망되고 있다.

국제해운민간단체들은 이에따라 각국 정부에 해적위험해역에 해군 파병은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적금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운항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원유수송의 40%에 해당하는 선박이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고 있으며 일부 해운선사들은 동위험해역을 회피하여 케이프타운을 경유한 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간 24~30억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선사들이 선박안정을 위해 추가 안정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3억6,300만달러에서 25억달러에 이르는 등 해적에 따른 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컨테이너 물동량 강세 및 운임안정 예상

2011년 컨물동량 증가율 최소 6~8% 이상 전망

향후 컨테이너 해운 산업에 대한 신뢰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에 대한 낙관론에 힘을 주고 있다고 AP Moller의 Nils Smedegaard Andersen CEO는 밝혔다.

Andersen CEO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전망을 6~8%로 말하고 있지만 올해 말에 가서 보면 물동량 증가는 훨씬 가파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최소 6% 이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ABG Collier의 해운 애널리스트인 Lars Heindorff씨는 밝혔다.

지난 해 9개월동안 AP Moller의 컨테이너 수송 물량은 7% 증가했지만 평균 운임은 2009년 같은 기간 대비 34% 상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물동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운임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임은 2009년 후반 및 2010년 초 최저 수준에서 급속히 상승한 것이다.

NOL에 따르면, 2009년 3분기 FEU당 2천219달러에 그친 운임이 2010년 3분기에 3천120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6주기간 동안 운임은 다시 하락해 FEU당 2천647달러로 하락한 바 있다.

해운산업 실적의 열쇠인 경제 회복은 전세계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해 컨테이너선사들이 시황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속운항 및 투입선 복 조절로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

장의 회복세는 유럽 수요 약세 등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선 해운 시장의 주요 이슈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환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지에 달려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컨테이너선 해운 시장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rewry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지난 해 컨테이너 선사들의 수익은 17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0억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2009년의 195억달러 손실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과거와는 달리 컨테이너 선사 및 하주들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피흘리는 전투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주들은 선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비용을 약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선사들이 점유율 경쟁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면 하주들의 공급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선사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Sydbank 해운애널리스트인 Jacob Pedersen씨는 컨테이너선 업계는 수요의 계절적인 요인에 예전보다 훨씬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컨테이너 해운시장 안정적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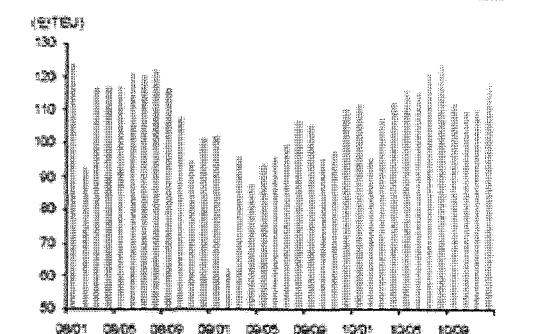
금융위기 이전 대비 수급측면에서 견고한 회복 기록

2011년 컨테이너 해운 시장은 공급측면에서 대형 선 인도가 많지만 금융위기 이전 대비 부담이 적고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물동량의 의미 있는 증가가 기대된다고 신영증권의 염경아 연구원은 밝혔다.

공급측면에서 보자면, 컨테이너 운송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2010년 하반기에는 인도 시기를 뒤로 미뤘던 선박들의 인도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8천TEU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2010년 하반기에만 38만TEU 이상 인도되면서 주요 노선(아시아-미주/유럽)의 공급량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물동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운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1년에는 상반기 중에 2010년 하반기에 인도된 물량보다 많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다. 상반기 인도예정량은 52척이며, 선복량 기준으로는 약 58만TEU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성수기 운송에 투입될 선박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인도되는 모습이다.

도표 5. 아시아>유럽 물동량



자료: CT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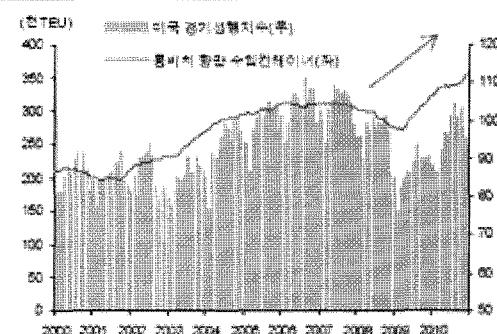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연중 컨테이너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증가율은 1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평균적으로 13% 이상의 공급 증가가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공급 부담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향후 운임의 움직임을 결정할 요소는 주요 노선(아시아-미주/유럽)의 물동량 증가이다.

신규 인도되는 대형컨테이너선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면, 2010년 이상의 운임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2010년은 불황기 이전 수준의 물동량을 회복한 유럽노선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한 해였다. 아직까지 1만TEU 이상의 선박의 접안이 제한적인 미주 노선보다 대형선 투입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수입된 물동량이 전년대비 17.7% 나 증가했다. 2011년에는 아시아지역 선주들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미주노선의 물동량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6. 홍콩>미국의 컨테이너 수입량과 미국 경기선행지표



자료: Bloomberg, 홍콩>미국 수입량 리서치센터

2011년 심각한 선박공급과잉은 없을 듯

선박 인도지연 및 취소량 증가에 따른 공급조절 기대

탱커, 벌커 및 컨테이너선 부문의 심각한 선박 공급과잉은 지난 해에 이루어진 선박 인도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런던 소재 선박 브로커인 Braemar Seascope는 밝혔다.

Braemar Seascope는 2009년말 수주잔량과 2010년 실제 선박 인도량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선박 인도 예정물량과 실제 인도물량의 차이는 조선 및 운임 시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2010년 인도 예상물량과 실제 인도량의 차이는 일부 조선소의 기술적인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낙진에 따른 것이다. 일부 발주 물량은 취소됐으며 상당수의 발주물량은 선주들이 납기 연기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벌커의 경우 2010년 인도 예정물량은 1천400척 /1억1천300만DWT이었지만, 실제 인도량은 950척/780만DWT에 그쳐 인도 지연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프사이즈 벌커의 경우(12만DWT 이상) 270척이 인도 예정이었지만 실제 인도 물량은 195척으로 인도 지연비율이 27%에 달했다.

2011년 케이프사이즈 벌커 인도 예정물량은 262척에 달하고 있지만, Braemar Seascope의 연구 책임자인 Mark Williams씨는 벌커 운임 전망을 감안하면 인도 지연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선박 인도 지연은 선박 수요가 공급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탱커 부문의 경우도 2010년 한 해 동안 인도 예정물량이 거의 400척/5천100만DWT이었지만 실제로 인도된 선박은 290척/3천700만DWT으로 인

도 지연률이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에즈막스 탱커는 57척의 인도가 예정됐지만 36척만이 인도돼 납기지연 비율이 37%를 기록했다.

수에즈막스 탱커 이하 사이즈의 경우 22척의 핸디 탱커가 인도 예정이었지만 실제 인도 물량은 9척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인도 예정인 VLCC는 거의 80척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인도 지연이 26%에 달했으며 원유 수요가 강세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에서 지지됨에 따라 선박 공급과잉에 따른 최악의 영향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Braemar Seascope는 올해 인도 예정인 수에즈막스 탱커 60척이 적기 인도는 어려울 전망이며 수에즈막스 탱커의 공급 과잉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컨테이너선복량은 지난 한 해 350척 이상의 선박이 신규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며, 이중 7천500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80척이었다.

예상인도 물량은 170만TEU였지만, 실제 인도 물량은 290척/135만TEU를 기록했다.

Braemar Seascope는 2010년 컨테이너선 인도 지연은 감속운항, 계선 및 다른 형태의 선박 공급 관리로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10년 한 해 동안 인도 지연된 컨테이너선의 비율은 27%이며 올해에는 222척/147만TEU가 인도될 예정이지만, Braemar Seascope는 올해 컨테이너선의 인도 지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